

제269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2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년 2월 20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10
- 나. 제 출 자: 강선영 의원 외 7명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2월 10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2월 17일

2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와상 상태이거나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다. 조호물품 지원요건, 지원내용 등 지원 절차 전반에 대해 규정
(안 제3조~제6조)
- 라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나. 합 의: 어르신복지과

다. 예산조치:

○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균형 적용시 206명*연180천원 = 37,080천원

○ 일일필요량 지원시

800원*주40매(1일5.7매)*206명*52주(1년) = 342,784천원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0. 2. 11. ~ 2. 15.)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관내 저소득층 노인성 질병자 중 와상상태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호물품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1)[안 제1~2조]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

2)[안 제3조] 조호물품 지원요건에 대해 규정

○ 수급권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및 차상위계층

○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저귀 교환, 피부관리, 욕창관리 등 조호물품 필요한 자

○ 장기요양시설 입소 또는 정부 또는 서울시 예산으로 조호물품을 지원받지 않는 자

3)[안 제4조] 지원내용 등

- 예산 범위 내에서 조호물품 지원
-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 및 조호물품의 내용은 구청장이 정함

4)[안 제5조] 신청 방법 등

-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고,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여부는 구청장이 정함
-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부양가족 또는 복지관 담당 사회 복지사,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신청가능

5)[안 제6조] 지원의 중단

- 대상자 사망, 조호물품 지급 거부, 부정수급 등
-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국·시비를 통해서 조호물품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치매 소견자 기저귀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는 제외하고 장기간 외상 상태이거나 각종 질병으로 인한 배뇨 또는 배변의 어려움으로 욕창 등 각종 피부질환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-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층의 생활위험을 막고,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, 예산이 소요되는 제정 조례안이므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
□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(이하 "노인성질환예방사업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